

대구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20가합201341(본소), 2020가합201358(반소) 판결
[대여금 ·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대구고등법원 2022. 5. 11 선고 2021나21129(본소), 2021나21136(반소)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20가합201341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길, 담당변호사 이승익

피고(반소원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인삼

변론 종결2020. 12. 17.

판결 선고2021. 1. 14.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331,15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14.부터 2021. 1. 1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2/7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66,490,15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12.자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49,240,83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의 대표자이고, 원고는 C에서 피고를 알게 되어 그곳에서 축원이나 불공을 올린 신도이다.

나. 원고는 2011. 3. 3.부터 2018. 8. 3.까지 원고 명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 C 명의 계좌, 피고의 딸 D 명의 계좌, 피고의 아들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명의 계좌, G 명의 계좌(이하, '피고 측 계좌'라 한다)로 합계 716,340,000원을 송금해왔고, 피고는 2012. 10. 31.부터 2018. 9. 18.까지 피고 측 계좌에서 원고 명의 계좌로 합계 427,306,832원을 송금해왔는데, 그 세부내역은 별지1, 2와 같다.

다. 한편 피고는 2014. 4. 15. 원고에게 F 명의 별지3 제1항 기재 주택(이하, 'H 주택'이라 한다)을 매도하고, 2014. 5. 30.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원고가 위 주택을 별지3 제2항 기재 주택(이하, 'I 주택'이라 한다)으로 교환해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4. 10. 8.

원고로 하여금 신규매수인 J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2014. 12. 1. J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도록 해 주었는데 J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중 H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6,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4. 4. 16. 원고에게 주식회사 F 명의 I 주택을 위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5,500만 원에 매도하고, 2014. 5. 2.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피고는 2015. 4. 3. 원고에게 주식회사 F 명의 별지3 제3항 기재 주택(이하, 'K 주택'이라 한다)을 위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고, 등기비용 등을 합한 1억 1,300만 원에 매도하고, 2015. 4. 22.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0. 15.경 원고로부터 8,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1), 2013. 일자불상경에는 원고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각 작성해주었다.

사. 원고와 피고는 I 주택, K 주택의 매매대금 잔금 및 원고가 J에게 H 주택을 매도하고 받은 6,500만 원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권에 충당하기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5호증, 을 제1 내지 3, 12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본소청구)

원고가 피고 측 계좌로 송금한 돈에서 피고 측 계좌에서 원고에게 송금한 돈을 공제하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주택들을 매수하면서 지급해야 하는 매매대금 잔금과 J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모두 공제하더라도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아야 할 돈은 57,185,168원이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가 부담해야 하는 싱크대 공사비용 800만 원과 피고의 병원비 1,304,990원을 대신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66,490,158원(= 57,185,168원 + 8,000,000원 + 1,304,9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반소청구)

원고가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원 중 일부와 싱크대 공사비용은 대여금이 아니라 불공비에

해당하고, 잔존대여금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주택들을 매수하면서 피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매매대금 잔금과 J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피고 측 계좌에서 원고에게 송금된 금원, 주식회사 L 또는 M이 원고에게 송금한 금원을 공제하면 오히려 피고가 원고에게 149,240,832원을 초과 변제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당사자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원고가 피고에게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합계 661,000,000원을 대여해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아래 표2 기재 1,820만 원은 지급금액, 시기, 방법 등이 피고가 대여금으로 인정하는 금원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점, ② 피고가 원고로부터 송금 받은 금액 대부분을 대여금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합계 1,82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표1>

120605	5,000,000	160409	5,000,000
120608	10,000,000	160516	1,500,000
130411	10,000,000	160527	3,000,000
130515	40,000,000	161031	9,000,000
130613	2,000,000	161108	40,000,000
130701	100,000,000	161124	5,000,000
130702	10,000,000	161130	5,000,000
130725	38,000,000	170208	1,800,000
130828	200,000	170406	2,500,000
130930	500,000	170422	3,500,000
131007	6,800,000	170515	5,000,000
131016	45,000,000	170703	2,200,000

120605	5,000,000	160409	5,000,000
131113	5,000,000	170816	4,000,000
131114	15,000,000	170831	9,000,000
131123	1,350,000	170925	7,000,000
131202	37,000,000	170930	1,700,000
131214	10,000,000	171212	6,100,000
140322	1,000,000	171228	1,000,000
140327	3,000,000	171230	1,000,000
140405	7,800,000	180115	4,000,000
140424	2,000,000	180220	2,900,000
140717	5,000,000	180315	1,000,000
140722	5,000,000	180327	5,000,000
140724	7,000,000	180402	1,000,000
140730	13,400,000	180406	7,000,000
141013	20,000,000	180420	5,000,000
141030	26,000,000	180514	3,500,000
141031	4,000,000	180524	600,000
141113	650,000	180531	1,700,000
141124	1,800,000	180615	8,500,000
141222	40,000,000	180620	1,500,000
141223	20,000,000	180702	4,500,000
150723	5,000,000	180803	2,000,000
160114	2,000,000		
합계 661,000,000원			

<표2>

130514	5,000,000	160212	4,000,000
160204	2,500,000	160214	2,200,000
160211	2,500,000	180430	2,000,000
합계 18,200,000원			

2) 나아가 갑 제10 내지 12, 19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고는 2014. 8. 29.부터 2014. 9. 30.까지 N한방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그 진료비가 1,304,990원인데 원고가 2014. 9. 30. 이를 대신 결제한 점, ② 원고가 싱크대설치를 위해 자신의 신용카드로 O(현재 상호: P)에서 2013. 11. 13. 180만 원, 2014. 1. 9. 220만 원, 2014. 2. 4. 260만 원을, Q에서 2014. 10. 7. 140만 원을 결제하였고, 위 O의 직원 R과, 위 Q의 직원 S이 원고가 F를 위해 결제한 것이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점(을 제11호증은 원고가 위 R, S에게 위 각 금액을 써달라고 요청하였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위와 같이 원고의 결제내역이 확인되는 이상 갑 제11, 12호증의 기재는 충분히 믿을 수 있다), ③ 원고가 피고의 병원비를 대신 결제해 줄 특별한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와 피고간의 금원거래가 상당부분 차용금으로 인정되는 이상, 원고가 F의 싱크대 설치비용 및 피고의 진료비를 대납해준 것 역시 그러한 방식으로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해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위 싱크대설치비용 및 진료비 상당액인 9,304,990원을 추가로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나아가 원고는 위 금원을 포함하여 피고에게 합계 708,474,99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인정된 688,504,990원(= 661,000,000원 + 18,200,000 9,304,990원)을 초과한 송금액의 경우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 측 계좌로 송금된 사실만 인정될 뿐 해당금원을 대여금으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3) 한편 원고는 2012. 10. 31.부터 2018. 9. 18.까지 아래 표3 기재와 같이 피고로부터 650,184,832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며,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 측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여 대여해주기도 하였고, 위 계좌에서 금원을 송금 받아 변제받기도 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계좌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은 원고가 자인하는 부분 이외에도 변제로 봄이 타당한 점, ② 피고를 포함한 피고 측 계좌의 명의인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대여한 금원을 변제하는 것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원고 또는 원고의 친족 등에게 금원을 송금할 이유가 없는 점을 종합하면 아래 표4 기재와 같이 피고 측 계좌에서 원고 또는 원고의 친족 등에게 송금된 합계 27,989,000원 역시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나아가 피고는 위 금원을 포함하여 원고에게 추가로 금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인정된

678,173,832원(= 650,184,832원 + 27,989,000원)을 초과한 금액의 경우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주식회사 L 또는 M이 원고에게 송금한 금원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H 주택의 경우 J가 원고에게 송금한 6,500만 원을 이미 변제액으로 계산하였고, 6,500만 원이 아닌 9,000만 원이 변제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③ 일부 송금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위 678,173,832원을 넘어선 금액을 변제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2) .

〈표3〉

121031	10,000,000	160106	700,000
121229	500,000	160115	2,000,000
130131	500,000	160126	1,950,000
130228	500,000	160201	700,000
130328	500,000	160226	2,440,000
130430	500,000	160307	700,000
130527	10,100,000	160328	2,690,000
130531	500,000	160411	700,000
130617	32,100,000	160421	700,000
130701	500,000	160425	2,500,000
130715	3,100,000	160502	1,000,000
130729	170,000	160520	4,530,000
130801	6,500,000	160602	780,000
130805	1,340,000	160620	960,000
130812	3,000,000	160627	2,550,000
130930	2,000,000	160705	700,000
131003	1,500,000	160715	50,400,000
131018	1,530,000	160721	4,120,000
131029	3,000,000	160726	2,030,000
131101	1,250,000	160805	5,000,000
131126	1,500,000	160826	2,000,000
131128	900,000	160907	3,620,000
131226	1,000,000	160926	1,990,000

121031	10,000,000	160106	700,000
131226	300,000	161019	5,700,000
131231	2,000,000	161026	1,400,000
140211	5,000,000	161207	700,000
140226	2,353,000	161226	3,150,000
140311	750,000	170124	3,000,000
140326	1,800,000	170223	500,000
140401	3,000,000	170227	650,000
140416	55,000,0003) I 주택 매매대금 잔금	170228	900,000
140428	1,320,000	170315	700,000
140503	1,500,000	170327	2,640,000
140511	2,170,000	170410	700,000
140526	1,900,000	170426	2,000,000
140611	1,350,000	170427	420,000
140615	1,600,000	170510	700,000
140626	4,308,000	170525	1,500,000
140702	740,000	170526	1,250,000
140731	750,000	170602	400,000
140920	4,140,000	170613	1,000,000
140926	2,081,000	170626	620,000
140930	5,000,0004) H 주택과 관련하여 J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170628	700,000
141008	25,000,0005) 상동	170707	2,220,000
141011	150,000	170710	3,890,000
141011	200,000	170717	700,000
141025	35,000,0006) 상동	170801	1,800,000
141104	640,000	170807	900,000
141127	2,186,000	170823	4,020,000
141224	35,050,000	170828	1,000,000
141226	2,600,000	170830	1,000,000
141229	900,000	170910	700,000
150102	700,000	171010	430,000
150126	2,177,000	171026	2,200,000
150128	2,200,000	171106	4,000,000
150131	2,200,000	171113	700,000

121031	10,000,000	160106	700,000
150212	800,000	171127	1,340,000
150227	4,612,000	171222	1,600,000
150324	300,000	180119	4,930,000
150326	2,200,000	180124	1,600,000
150326	280,000	180126	300,000
150331	490,000	180130	3,865,000
150401	700,000	180208	700,000
150403	113,000,0007) K 주택 매매대금 잔금(앞서 본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총 2억 6,000만 원으로 인정하였음)	180226	1,600,000
150427	1,480,000	180307	100,000
150427	1,500,000	180316	550,000
150511	1,200,000	180319	1,000,000
150515	600,000	180320	250,000
150522	300,000	180326	1,600,000
150526	2,200,000	180404	1,050,000
150602	700,000	180414	700,000
150608	400,000	180414	6,300,000
150626	2,930,000	180418	450,000
150701	700,000	180427	1,865,000
150716	15,000,000	180528	2,440,000
150727	570,000	180529	960,000
150731	2,150,000	180618	330,000
150819	5,700,000	180627	4,760,000
150826	2,480,000	180702	1,350,000
150904	700,000	180712	127,000
150930	2,330,000	180726	655,000
151014	700,000	180728	550,000
151026	2,340,000	180817	194,500
151126	1,990,000	180827	640,000
151218	570,000	180917	1,000,000
151228	2,300,000	180918	651,332
합계 650,184,832원			

<표4>

120704	1,700,000	141211	3,000,000
130204	100,000	150323	300,000
130304	100,000	150719	1,000,000
130405	100,000	151030	1,000,000
130503	1,000,000	160313	80,000
130610	1,000,000	160414	80,000
130704	1,000,000	161128	1,960,000
140127	1,140,000	180309	70,000
140128	60,000	180318	50,000
140530	2,000,000	180327	50,000
140602	1,000,000	180405	27,000
140828	3,500,000	180407	30,000
140901	3,000,000	180619	50,000
140901	780,000	180515	2,000,000
140930	722,000	180717	1,040,000
141001	50,000		
합계 27,989,000원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대여금인 10,331,158원(= 688,504,990원 - 678,173,832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12.자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20. 8.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 1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보았듯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금원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잔존 대여금 10,331,158원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해야 하는 금원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반소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주경태

판사홍승희

판사한대광

별지

- 1) 이 차용증은 피고와 피고의 아들 E이 서명·날인하였다.
- 2) 일부기간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차용금을 넘어선 금액을 송금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가 차용금의 이자에 관하여 주장하지 않고 있지만, 이자약정이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이를 고려한다면 피고가 차용금을 넘어선 금액을 송금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구애받지 않고 판단하였음.
- 3) I 주택 매매대금 잔금
- 4) H 주택과 관련하여 J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 5) 상동
- 6) 상동
- 7) K 주택 매매대금 잔금(앞서 본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총 2억 6,000만 원으로 인정하였음)